

제30조 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) **계약기간** 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2) **계약목적** -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- 3) **입소보증금** -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.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

4) 이용비용 본인부담금

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/100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8% ,12% 경감(92,88/100)
-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음-식사재료비(간식비 포함), 상급침실 이용료, 이.미용비 등
- 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
 -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품목,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
 -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(실비)을 수납할 수 있음 - 개인선택형 프로그램, 교통비 등

5)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- **(신원인수인의 의무)**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,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 비용으로 원상 회복시킴을 도록 하며,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 - **(신원인수인의 권리)**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(건강상태포함)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의무가 있다.
 -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제공되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가 책임지도록 한다.
- 6) **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**-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**이용 계약서**를 체결한다.

-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-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서비스이용계획 수립과 성실한 급여제공의무
-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모든 생활, 건강상태등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■ 입소어르신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■ 가족대표자(보호자)의 의무

-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
-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-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장기출장(해외) 등으로 가족대표자 부재시 대리인 선정의무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원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
■ 입소어르신(가족) 권리 및 책임

- (어르신 권리) 계약체결 시 어르신권리에 대해 어르신(가족)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.
- (어르신상담) 어르신 상태 및 급여서비스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
하고 반기별로 욕구사정을 통해 급여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.
- (가족간담회) 반기별 1회 실시하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,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7) 계약의 해지

- (입소자의 계약해지)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
- (시설의 계약해지)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.
 - 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- ㉔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㉕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㉖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㉗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 유보 가능
- 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㉙ 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,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
- ㉚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(단,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.)

제3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- 1) **이용료 변동 절차** -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이용자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급여수가에 따라서 적용하며 비급여 부분은 매년 혹은 시설운영의 필요시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단, 급여 비용반영 2개월 전에 공시
 - 등급의 변경 시 - 재계약필수
 -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 시 - 서비스이용기간 내 변동수가발생시 변동내용에 대한 것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 -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시
 - 시설운영비의 증가 - 물가의 변동이 심하여 비급여 상승할 수 있으며 변동내용에 대한 부분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- 2) **보호자(수급자)** - 유선, 문자, 서면으로 고지 및 안내, 상담 후 계약서를 재작성한다
- 3) **월 이용료**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)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 단,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을 적용한다

(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금액)

◇ 시설급여 (1일)

구 분		1등급	2등급	3,4,5등급
요양급여	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84,240	78,150	73,800
비급여	상급침실 이용료	20,000원(2인실)		
	식재료비(1식)	4,500원		
	간식비(1회)	1,500원		
	이/미용료 등	발생시		

※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별도 개정 없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라 적용한다

●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에 따라 시설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 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 반	20%	15%
기초수급권자	0%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10%	7.5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
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**식사재료비** :景观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**이·미용비**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**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**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3) 이용료 등 수납

-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(비급여포함)는 관계법 및 지침, 혹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다.

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정해진 수협 1010-2438-1858로 입금하여야 하며 카드결제시에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로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도록 한다. 반영일 5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시설 공지(유선, 문자, 이용료명세서 우편 발송, 방문 시 등)를 통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2조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① 서비스내용

- 시설급여 -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동

지원 등 제공 그 외에 수급자에게 배설, 목욕, 식사, 취사, 조리, 세탁, 청소,

간호,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

- 그 외 서비스내용

상담서비스, 보건의료서비스, 교육, 재활서비스, 사회심리지원서비스, 급식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,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수급자는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다

■ 기타서비스내용

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에 수급자 혹은 가족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서비스는

기관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 서비스이용부담 및 변경방법

■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

범주에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수납은 하지 않는다

- 다만, 수급자 혹은 가족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,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.

■ 실비중단은 수급자 혹은 가족의 요구나 급여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건강상태가

현저히 나빠졌을 경우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

■ 기타비용

욕창처치, 인슐린 주사 등 전문 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자에서 지불한다

- 고시에 정함이 없는 수급자 개별부담금(복용약 등)은 계약서에 의거 보호자 및 수급자가 부담한다